

외국 의약품 인도네시아 반입 주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6.9.1.(화)

1. 최근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A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다가 공관의 도움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코데인(Codeine)은 아편유사계 성분으로 주로 진통제 및 진해제로 사용

2. 인도네시아는 식품의약품 감독청(BPOM)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PerBPOM No.28/2023)

- 개인 사용목적의 의약품, 제한된 수량, 판매/재판매 목적 금지, 필요시 의사처방전 제시
-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시

유형	처방전 없을 경우	영문 처방전 보유시
고형제	30정/제품/인	최대 90일 치료분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3개/제품/인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금지	최대 60일 치료분
마약류	반입금지	반입금지

- 배송물품으로 반입시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반입 불가)

유형	영문 처방전 보유시
고형제,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최대 90일 치료분
향정신성의약품	최대 60일 치료분
마약류	반입금지

3. 단,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개인치료 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반입을 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SAS, Special Access Scheme)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웹사이트 : sertifikasicdob.pom.go.id/wasdisobat/sas/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WhatsApp : +62 812 1298 7545

4. 이와 관련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